

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산재예방 서비스 전문기관” 으로 재도약!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시본부**  안전은 권리입니다

수신자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설비 공급 및 S/W개발 현장소장)

(경유) [크레텍책임(주) 대표이사]

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알림

1. 귀사의 무재해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설비 공급 및 S/W 개발공사」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으로 알려드리며,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부.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 1부.  
3.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1부.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안내사항 1부. 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시본부



대리 **차명진** 차장 **김태환** 건설안전부장 03/03 **김재관**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부-361 ( 2023. 3. 6. ) 접수 ( )

우 / <http://www.kosha.or.kr>

전화 053-6090-597 /전송 053-421-8626 / [cmjin216@kosha.or.kr](mailto:cmjin216@kosha.or.kr) / 비공개(6,7)

대표번호 052)703-0500 1644-4544 <http://www.kosha.or.kr> /고객참여

o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 갑질,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신고(전화 052-2458-114, 공단홈페이지-민원-신고센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사업장명	㈜에스에프에이 대구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설비 공급 및 S/W 개발공사		
업종	건설업	전화번호	041-539-9502 010-5534-0991
소재지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866, 602		
사업주 성명	김영민 (정중식 현장소장)		
심사대상 공사 종류	높이 31m이상 건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 불임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을 통지합니다.

2023년 3월 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첨부서류	1. 계획서 1부 2. 보완사항 기재서 1부
------	-----------------------------

##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

2023년 3월 3일

책임심사위원 : 김 재 관 

심 사 번 호	제 대구본건-2023-0-009호	
회사 및 현장명	㈜에스에프에이 대구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설비 공급 및 S/W개발공사	
심사 대상공사 종류	대상공사별 종합의견 및 판정결과	
터널공사	조건부 적정 (철골전도, 작업자 추락, 자재낙하 및 양중작업 안전확보)	
심 사 항 목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주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화 설비(랙 + 스택크레인)와 컨베이어 시스템 및 s/w 개발 등</li> <li>- 공장 구조물, 판넬, 소방, 전기 등 별도 발주</li> <li>* 안전보건 조정자 역할이 중요함.</li> </ul>	
양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랙, 철골 설치에 따른 양중계획 충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중, 작업반경, 장비제원 등</li> </ul> </li> <li>2. 랙과 철골기둥 설치초기 guy rope 설치 등 전도 방지조치 유념</li> </ol>	안전규칙 제132~170조
랙 조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작업자 승강용 워킹타워는 작업초기에 우선설치 하시고, 인접 랙이나 철골과 연결하여 전도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장 길이가 100여m 이므로 승강통로는 2~3 개소 설치하여 원활한 이동확보</li> </ul> </li> <li>4. 추락, 낙하 방지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 시설은 지상에서 선 설치하여 고소작업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직이동구간에는 구멍줄과 코브라, 수평이동 장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li> </ul> </li> <li>5. 작업자 주 통로에는 발판설치</li> </ol>	안전규칙 제14, 21~30, 42~49조
안전보건 조정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공장 건축물, 소방, 전기, 판넬 등이 별도 발주 되어 일관된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조정자가 지정되고 현장전체의 안전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게 업체별 충분한 소통과 절차 정하기 등 협업이 필요</li> </ol>	법68조

심사항목	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별도발주	7. 별도 발주 공종별 혼재되어 작업시 화재 등의 재해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순서 재검토. 동시작업 통제 등 공사전체에 대한 조율과 관리감독 필요	안전규칙 제236, 239~246조									
II. 확인	<p>1-1 확인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확인 예정일: 2023년 5월(랙 조립)</li> <li>- 주요 확인공종별 대형사고 위험요인 확인 예정일: 확인담당 판단</li> </ul> <p>※ <u>최초 확인일 또는 대형사고 위험작업 예정시기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정을 해당작업 15일 전까지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u></p> <p>1-2 확인 시 제시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 사항에 대한 현장 보완서류 등</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대형사고 위험요인</th> <th style="width: 25%;">장소 및 작업</th> <th style="width: 25%;">작업예정시기</th> <th style="width: 25%;">위험작업 시 확인 중점 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도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랙 조립</td> <td style="text-align: center;">'23. 5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도, 추락, 낙하 방지조치 등</td> </tr> </tbody> </table>				대형사고 위험요인	장소 및 작업	작업예정시기	위험작업 시 확인 중점 사항	전도 등	랙 조립	'23. 5월	전도, 추락, 낙하 방지조치 등
대형사고 위험요인	장소 및 작업	작업예정시기	위험작업 시 확인 중점 사항								
전도 등	랙 조립	'23. 5월	전도, 추락, 낙하 방지조치 등								

## 이의제기 절차 안내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직원 : 대구광역본부 건설안전부 과장 박근식  
( 전화 : 053-609-0595, 팩스 : 053-421-8626 )  
대구광역본부 건설안전부 대리 차명진  
( 전화 : 053-609-0597, 팩스 : 053-421-8626 )

업무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불편 · 부당한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이의제기 안내요구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 ▶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지연, 설명요구 거절
- ▶ 이의제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

- ☞ 대구광역본부 본부장 이동원 (☎ 053-609-0501)  
건설안전부장 김재관 (☎ 053-609-0599)  
소재지 : (우)41939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1층

- ☞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또는  
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붙임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 안내사항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 안내 (구,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 계획서 현장의 상시적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위하여 **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오니, **아래 관리번호를 통해 가입** 바랍니다.
  - (주요기능) ①확인 개선결과 제출, ②대형사고 위험작업 시기 입력, ③심사 조건부 사항 등 계획서 이행여부 자료 등록, ④월별 자체점검 자료 등록

「통합지원시스템」 현장별 관리번호 : 9220230009

\* 「통합지원시스템」 접속 경로 : [kosha.or.kr/constplan](http://kosha.or.kr/constplan) [덧붙임1] 통합지원시스템 가입 방법 상세 안내

- (월별 자체점검) 계획서 현장의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 바랍니다.
  - \* 자체점검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니,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개선 전, 후 사진)를 등록
- (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심사 시 논의된 **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변경 시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변경 일정을 「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 바랍니다.
  - ※ ①매월 자체점검 결과 미등록, ②대형사고 위험작업시기 미입력 시 고용노동부 감독대상 우선 선정 예정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차등적용 및 행정조치 강화

-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사고사망 특성에 따라 위험작업 시기에 맞춰 **확인주기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미 이행 시 행정조치가 즉시 시행** 될 수 있으니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망사고 다발 기인물 및 안전조치」: 공단홈페이지→사업소개→건설안전→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

### 3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 변경 시 계획서 보완·변경

-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 변경(**가설구조물 변경 포함**)\* 시에는 작업 시작 전까지 반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해당내용을 **보완·변경**하고 **이력관리표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호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주요 작성대상” 변경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가설구조물” 변경

### 4 관리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내용 인계·인수 실시

-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변경 시 **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 작성하여 계획서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 「계획서 인계·인수 확인서」서식: 공단홈페이지→사업소개→건설안전→심사 및 확인절차



1. kosha.or.kr/constplan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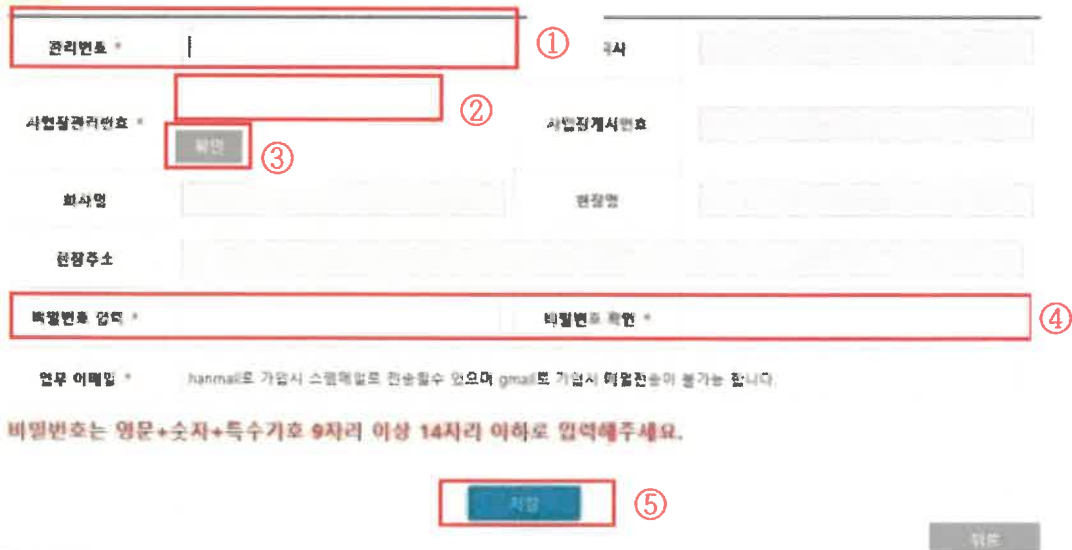


2. 로그인 클릭



3. 사용자 등록 클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사용자 등록



4. ① 관리번호에 1페이지 상단의 현장별 관리번호를 입력

② 사업장관리번호에 산재관리번호 입력

③ 확인을 클릭하면 해당 현장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됨

④ 비밀번호 설정

⑤ 저장 클릭

5. 가입완료 : 가입완료 후 ①관리번호가 시스템의 아이디로 설정이 됩니다.